현대포리텍 Hyundai Polytech	현대포리텍 협력사 행동강령	문서번호	HP-ESG-S-P10-01-K
	The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s of Hyundai Polytech	개정차수	1차

개정이력	차수	제 ·개정일	시행일	주요 제 ·개정 내용
	0 차	2024.12.02	2024.12.02	초도 제정
	1 차	2026.01.02	2026.01.02	1차 개정

현대포리텍 협력사 행동강령
(Hyundai Polytech Supplier Code of Conduct)
(공급망 정책)

결재	담당	팀장	본부장	총괄	대표이사
					

목 차

1. 개요
가. 행동강령 목적
나. 행동강령 대상
다. 협력회사 책임과 역할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나. 이해상충 방지
다. 불공정 거래 방지
라. 위조부품 방지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바. 정보보호
사. 지적재산 보호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다. 수자원 관리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마. 오존파괴물질 관리
바.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사. 화학물질 관리
아. 소음 관리
자. 동물복지
차.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4. 노동·인권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마. 근로시간 관리
바. 인도적 대우
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아. 윤리적인 채용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다. 비상상황 대응
라. 안전 관련 사고 관리
마. 안전 진단
바. 보건 관리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아. 취약근로자 위험 작업 금지

6. 경영시스템
가. 행동강령 수립 및 기업 성명서 공시
나. 담당자 선임
다. 리스크 점검
라. 교육 및 소통
마. 정보 관리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사. 구제수단 마련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자. 행동강령 준수

7. 공급망 실사

1. 개요

가. 행동강령 목적

현대포리텍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인식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현대포리텍 및 현대포리텍과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전반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외 ESG 관련 법규 및 글로벌 공급망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국내외 법령, 국제 규범 및 글로벌 공급망 실사 기준을 기반으로 수립되었으며, 각 국가의 법령이 본 행동강령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나. 행동강령 대상

본 행동강령은 현대포리텍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내외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현대포리텍은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력사는 필요 시 하위 협력사 및 거래업체에게도 본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협력회사 책임과 역할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본 행동강령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대포리텍은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과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절차 및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중대한 위반 또는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는 협력사 선정 및 거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모든 세부 이행사항을 포괄하는 문서는 아니며, 현대포리텍은 공급망 환경 변화,

법·제도 변화 및 글로벌 ESG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포리텍은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문서, 교육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 및 공급망 참여기업에게도 본 행동강령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① 현대포리텍의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적용되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 금품, 향응, 접대, 편의 제공,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③ 또한 협력사는 부정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약속, 제안, 제공, 수수 행위 계약 체결, 납품, 가격 결정, 평가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절차, 교육, 신고 체계 등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회사 또는 현대포리텍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해야 합니다.
② 이해상충이란 개인의 사적 이익, 가족관계, 금전적 관계 또는 기타 개인적 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약속, 제안, 제공, 수수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되며, 업무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가격 담합, 거래 조건의 부당한 변경, 경쟁 제한 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또한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기한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또는 부품을 생산·사용·유통해서는 안 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원재료 및 부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와 부품이 계약 조건, 기술 규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절차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위조 또는 부적합 부품 사용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시 현대포리텍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① 협력사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및 무역 관련 법령과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출통제 또는 경제제재 대상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관리 절차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현대포리텍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사는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 관련 현황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현대포리텍,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영업비밀, 기술 정보, 개인정보 등 모든 비공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정보의 수집·이용·보관·폐기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 지적재산 보호

① 협력사는 현대포리텍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특허, 상표, 설계, 기술자료 등 지식재산권을 존

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침해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 책임 있는 자재 구매

① 협력사는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의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해 OECD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체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② 협력사는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현대포리텍에 납품되는 제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의 조달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된 원재료, 부품 또는 구성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 및 책임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 및 제련소와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인 환경 영향 등 사회·환경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가 광물 및 원재료를 주요하게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또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적절한 검증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환경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완화하기 위해 조직, 기획, 실행, 점검 및 성과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관리체계는 ISO 1400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경영시스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협력회사는 전사 또는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HG Protocol에 따라 Scope 1(직접 배출), Scope 2(에너지 간접 배출), 그리고 필요 시 Scope 3 중 Category 1(구매한 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기준으로 추적·문서화하고, 감축 목표 또는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관리

①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폐수 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측정·관리하고,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이용·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우수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우수 또는 화학물질이 우수관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관리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협력회사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농도를 측정·관리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적절한 공정 관리 및 저감 조치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오존파괴물질 관리

① 협력회사는 오존파괴물질의 보유 및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한 물질 및 기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불가피하게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협력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저감·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오존파괴물질의 사용 절감 및 단계적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현대포리텍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① 협력회사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계량·보관·처리·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확대

및 원재료·부품 회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회사는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식별·표기 또는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제품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적 및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절차를 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화학 성분 관련 자료를 확인·문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소음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지역사회 및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동물복지

① 협력회사는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제시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차.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①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감소·완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산림파괴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또는 관련 리스크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노동·인권

가. 아동노동 사용 금지

① 협력회사는 어떠한 생산 단계에서도 만 15세 미만, 의무교육 연령 미만 또는 법적 최소 근로 연령 미만의 아동노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아동노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신분증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④ 협력회사는 아동노동을 사용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와의 거래를 지양하고, 확인 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강제노동 사용 금지

① 협력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하며, 폭행, 협박, 감금, 채무에 의한 구속 등 신체적·정신적 강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강제노동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공정 또는 거래업체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금지 및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강제노동이 확인될 경우, 협력회사는 즉시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현대포리텍에 관련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① 협력회사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연령, 결혼·임신 여부 등 어떠한 사유로도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 고용 전반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성희롱, 폭언, 강압 등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법령 및 사내 기준에 따라 적절한 예방 및 관리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라.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고,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급

여 명세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 근로시간 관리

① 협력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불가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바. 인도적 대우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 윤리적인 채용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신분증, 여권 등 개인 신분서류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근로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회사는 고용을 명분으로 한 어떠한 유형의 수수료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③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5.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직, 계획, 실행 및 점검 활동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O 45001 등 국제 표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①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①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 특성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비상상황 대응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사업 특성 및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비상상황 대응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 안전 관련 사고 관리

① 협력회사는 안전 관련 사고, 아차사고 및 작업성 질병 등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때 '안전 관련 사건'이란, 안전한 작업장 관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의미하며, 아차사고, 사고, 작업성 질병 및 의료처치 사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안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업공간의 위험요인 및 유해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보건 관리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① 협력회사는 수급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취약근로자 위험 작업 금지
① 협력회사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야간작업 및 위험작업을 배정하지 않으며, 임부 및 산부에게도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작업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가. 행동강령 수립 및 기업 성명서 공시
① 협력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경영 및 ESG 경영에 필요한 행동강령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임직원에게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우 경영진 메시지,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 담당자 선임

① 협력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지정된 담당자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 계획 및 이행현황을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①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주요 리스크와 개선 필요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①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하거나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 정보 관리

① 협력회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실제 사업 운영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운영

①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이익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 구제수단 마련

①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관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피해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 또는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 당사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제 또는 시정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① 협력회사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판매, 제조 과정에서 관련되는 주요 거래업체 및 하위 협력회사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타 컴플라이언스 요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현대포리텍 공급망 행동강령의 취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거래업체 또는 하위 협력회사 등 공급망 참여기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ESG 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행동강령 준수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포리텍 또는 현대포리텍이 지정한 제3자가 실시하는 ESG 자가진단(SAQ),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와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기록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협력회사는 ESG 자가진단(SAQ),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④ 현대포리텍은 협력회사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개선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거래조건 조정, 신규 발주 제한 또는 거래관계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협력회사는 현대포리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ESG 준수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대포리텍은 본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계약서 또는 거래 기본계약의 ESG

조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7. 공급망 실사 (현대포리텍 협력사 행동강령)

① 협력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노동, 환경, 안전보건, 윤리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협력회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6단계 실사 절차를 참고하여, 자사의 규모와 사업 특성에 맞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관리감독 시스템 속으로 포섭
-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실질적·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

③ 협력회사는 필요한 경우 자사의 주요 거래업체 또는 하위 협력사에게 본 행동강령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④ 협력회사는 자사의 공급망 내에서 중대한 ESG 리스크 또는 법규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